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 준용 근거 마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0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 준용 근거 마련	2
2. 개정안 부칙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담금·환수금 등을 징수하기 위해 징수 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에, 공단의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려 합니다.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안 제52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 준용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공단의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단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3(서류의 송달) ①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단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함)」에 따르면, 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 국가, 학교경영기관이 각각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학교기관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이 해당되며, 환수금은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의 경우에 수급자가 반환하는 금액임.¹⁾
- 부담금과 환수금은 공단이 「사학연금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데,²⁾

1) 「사학연금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부담금”이란 국가부담금·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8. “개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국가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법인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1. “재해보상부담금”이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9조(급여의 환수)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급자(상속인을 포함한 다)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면서 공단에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급여지급 이후 발생한 급여제한사유 또는 수급권 상실사유를 공단에 사실과 달리 신고(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4.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2) 「사학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부담금 또는 환수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사학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음.³⁾

□ 이와 같은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 독촉, 체납처분 고지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전자고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휴·폐교, 폐문,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황의 지속으로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부담금 및 환수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⁴⁾

□ 이에 개정안은 공단이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대체 송달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여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 송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단

3) 「사학연금법」

제52조(강제 징수) ① 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4) 「사학연금법」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도 소멸한다.

③ 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 고지 및 독촉, 급여의 지급 청구 또는 잘못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의 징수업무가 지연되거나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제52조의3제1항에서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행정기관”은 “공단”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보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 송달에 대한 내용은 「행정절차법」, 「국세기본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송달의 방법,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⁵⁾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계 서류와 관련한 송달의 방법, 절차, 효력 발생 등을 상세하게 규정함.⁶⁾

□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행정청⁷⁾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아닌 공단에 적용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도 국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⁸⁾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

5) 제1장 총칙 -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6) 제1장 총칙 - 제3절 서류의 송달: 제8조(서류의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공시송달),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7)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8)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

의 송달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정안에서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0조제3항 및 제7항에 규정된 “행정기관”, “공무원”은 「사학연금법」에 맞추어 각각 “공단”, “직원”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국세기본법」 준용 조항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서류 송달	교부 송달	• (방법) 명의인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교부 가능 • (효력발생)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우편 송달	• (방법) 명의인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 등기우편: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 일반우편: 5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은 일반우편 송달 가능 * 일반우편 송달시 송달 확인 기록 작성 및 비치 • (효력발생)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전자 송달	• (사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 • (방법)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 • (효력발생)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부터
공시송달		• (사유) 서류 송달받아야 할 사람의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음, ③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
- 라. 종합부동산세
- 마. 부가가치세
- 바. 개별소비세
-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 아. 주세(酒稅)
- 자. 인지세(印紙稅)
- 차. 증권거래세
- 카. 교육세
- 타. 농어촌특별세

구분	내용
	• (방법)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게재 • (효력발생)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봄

□ 다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송달 조항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을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중 ‘정부’,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1조(공시송달)제2항,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제1항 등에 규정된 ‘납세자, 세액,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등의 용어는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제2항의 단서에 규정된 서류송달 중 일반우편 송달 가능 대상은 50만원 미만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단에서 징수 관련 서류 송달 시, 부담금 최초 고지는 일반우편과 전자고지로, 독촉 및 체납처분 고지는 등기우편과 전자고지로 하고, 환수금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는 상황, 등기우편 송달의 필요성, 송달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에 부합하도록 일반우편 송달 가능 대상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 및 환수금 고지 방식 및 현황]

구분	최초 고지	독촉 고지	체납처분 고지
부담금	• (일반우편) 월 1,100건 내외 • (전자고지) 월 4,400건 내외	• (등기우편) 월 30건 내외 • (전자고지) 월 30건 내외	• (등기우편 또는 전자고지) 연 5건 내외
환수금	• (등기우편) 연간 약 300건		

자료: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참고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준용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국세기본법」 송달 조항 준용 법률 조항]

구분	내용
준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서류의 송달) <u>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u>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9조(서류의 송달)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6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준용 + 일반우편 송달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서류의 송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5(서류의 송달)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과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 관하여 제81조의6(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u>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구분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5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u>일반우편</u>으로 송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6조(서류의 송달) 제57조의2(환수금등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등) 및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u>우편송달</u>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6(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u>우편</u>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u>일반우편</u>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국세기본법」의 송달 조항 준용으로, 송달 장소의 특정(제8조제1항) 및 신고(제9조), 연대납세의무자, 상속 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송달(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교부송달의 세부 절차(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전자송달의 요건 및 상세절차(제10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제11조), 송달의 효력 발생(제12조) 등이 적용되어,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 송달 절차에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용받는 대상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과 안내, 해당 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세기본법」 준용 조항]

국세기본법	비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u>그 명의인</u>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居所(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u>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u>(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u>송달</u>한다. ② <u>연대납세의무자</u>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u>상속재산관리인</u>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u>납세관리인</u>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u>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u>에게 송달한다.	• 서류송달 장소 특정 • 연대납세의무자, 상속 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송달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부</u>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u>신고된 장소에 송달</u>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류송달 장소 신고 • ‘정부’를 사학연금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u>등기우편</u>으로 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u>로서 그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u>일반우편</u>으로 송달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4.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③ <u>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u>은 해당 <u>행정기관(→공단)의 소속 공무원(→직원)</u>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u>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u>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u>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u>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u>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u>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u>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	• 서류송달 중 우편송달의 ‘일반우편 송달 가능 대상’을 사학연금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 서류송달 중 교부송달 세부 절차 및 장소 특정

국세기본법	비고
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공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따른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⑪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류송달 중 전자송달의 요건, 상세절차 등 규정 • ‘납세자, 세액,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사학연금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등 공시송달 게시처를 사학연금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송달의 효력 발생 • ‘국세정보통신망’을 사학연금에 부합하도록 변경 필요

주: 조문 내용 중 굵은 글씨는 개정안에 따라 수정되는 부분임

- 개정안은 제52조의3제2항에서 공단이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고, 「사학연금법」 제52조에서 부담금 또는 환수금 납부대상자가 공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⁹⁾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9) 「사학연금법」

제28조(공단에 대한 감독) 교육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강제 징수)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공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안 제52조의3제1항)

- 현행법에 서류송달과 공시송달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공단은 정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상의 관련 사항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용 조문인 「국세기본법」 제9조, 제10조제2항의 “정부”를 “공단”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준용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안 제52조의3제2항)

- 사학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공단의 부담금 및 환수금 직접 체납처분 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부담금 및 환수금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시송달의 경우도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준용 조문인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납세의 고지, 독촉, 강제징수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연금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 관련 고지는 정기 납부에 대한 단순 안내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도 송달이 가능하므로, 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반우편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일부수정

- 사학연금공단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고, 「사학연금법」에 따라 공단 스스로 기금 관리의 주체로서 급여를 결정하는 등 정부의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 및 공무원연금공단과 다르므로, 공법상 행위인 「국세기본법」 송달 규정 전체를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사학연금법」 제52조는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강제징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공시송달의 규정만 준용하는 것이 공단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개정법률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공단이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할 경우, 공단의 부담금 또는 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의 송달 절차에 전반적인 변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92